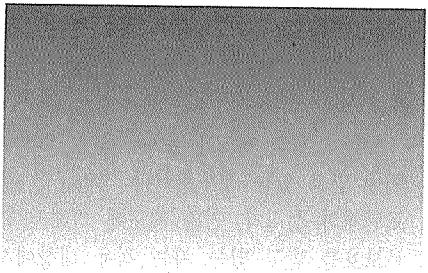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독의 질병보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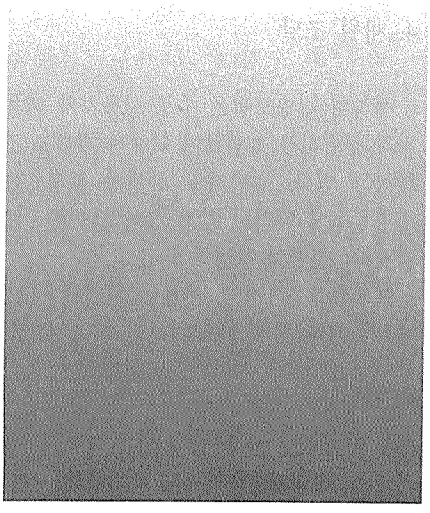

1. 개 요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는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로는 사회보험(연금, 질병, 산재, 실업보험 등)과 사회부조, 직업훈련 등 광범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질병, 노약, 불구 등과 같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질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독의 질병보험제도는 1881년 독일 제국시대의 황제 빌헬름 1세의 敎書에 의한 공적 질병 금고의 설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883년 질병보험법이 시행됨으로써 육체 근로자-후에 대상자가 확대됨-는 하나의 질병금고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질병보험은 서독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제일 먼저 실시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1884년 산재보험이 실시되었고 퇴직연금(1889년), 사회부조(1924년), 실업보험(1927년) 등이 뒤이어 실시되었다.

2. 관리운영체계

서독의 질병보험은 크게 나누어 일반 노동자, 직장 근로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보험(일반제도)과 자영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자 질병보험 등 2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제도에 의한 질병보험을 직역(職域)별로 구분하면 지역 질병금고(268개),

"서독의 질병 보험제도는 1881년, 황제 빌헬름 1세에 의해 설립된 공적 질병 금고에 그 기원을 둔다."

직장 질병금고(691개), 수공업자 질병금고(153개), 노동자 보충금고(8개), 직장 근로자 보충금고(7개)와 선원 및 광산 종사자를 위한 질병 금고가 각각 1개씩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자 질병보험은 19개의 농업질병금고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89년 9월 현재)

그러나 지역 질병금고와 직장 질병금고는 합병으로 인해 매년 그 수가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금고는 독립 법인체로서 재정 및 관리 운영에 있어 자치성을 부여받고 있다.

3. 적용 대상

일반 제도의 적용 대상자로서 일정 소득 이하의－'90년 1월 1일 현재 年收 5만6천 7백 마르크－일반 노동자 및 직장 근로자, 연금 수급자, 학생, 실업자, 자영 예술가 및 작가, 자영자, 외국인 등은 의무적으로 금고에 가입하여야 하며, 年收 5만6천7백 마르크를 초과하는 일반 노동자 및 직장 근로자, 고용주의 가족 등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종교단체의 성직자, 기타 제도에 의해서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농업자 질병보험은, 자영농민과 농업 피용자 및 농업 연금 수급자는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다.

이들 질병보험의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피부양자) 수는 '89년 9월 현재 약 5,600만명으로 총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가입자 중 약 540만명(총 인구의 7%)은 민간 질병 금고에 가입하고 있고 나머지 1%는 어떠한 금고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4. 재원 조달

서독의 질병보험은 주로 사용자와 피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일반제도 하에서 보험료는 질병금고에 따라서 각기 상이하며 勞·使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지역 질병금고(평균 13.5%)가 직장(평균 11.5%)보다 높고 월 소득이 610마르크 이하인 피용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年收 5만6천7백 마르크 이상인 임의 가입 대상자가 민간금고에 가입할 경우

서독의 질병보험은 일반노동자,직장근로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보험과 자영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자 질병보험으로 대별된다.

에는 사용자가 공적 질병보험 보험료 상당 금액의 1/2까지를 보조한다.

한편 농업자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같은 지역의 지역 질병금고의 평균 보험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5. 보험 급여

일반제도 하에서 보험급여는 질병급여 -입원, 외래, 약제, 保養, 치료, 질병예방, 상병수당- 와 출산급여 -분만, 임신, 중절, 분만 수당 등-, 재택 간호급여, 가정 원조, 사회복귀 서비스, 장례비 등이 있다.

상병 수당은 급여 사유 발생 최초 6주 동안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임금 형태로 지급하며 7주째부터는 질병금고에서 지급하는데, 급여율은 임금의 80%이며, 분만 수당은 산전 6주간, 산후 8주간 질병금고에서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가정 원조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代贊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업자 질병 보험의 급여도 일반제도의 급여와 거의 유사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자영농민(사업주)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피용자가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상병 수당 대신 대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6. 질병 예방 및 부가 급여

가. 질병 예방 급여

질병 예방 급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난이도에 따라 분류한 일련의 예방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의사의 방문 진료와 허가된 요양시설(health resort)에서의 예방 치료, 그리고 宿食을 통한 입원 치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 급여를 제공하는 목적은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지도 모를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의료서비스 및 간호의 필요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질병 금고는 통상적인 외래 급여 기준(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예방 급여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요양시설에서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는 약물, 온천욕, 일광욕 등과 기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療法은 각 지방의 천연자원을 활용하고 특별한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의 지도 하에서 요양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온천장이나 요양소에서만이 제공될 수 있다.

질병예방급여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

이때 질병 금고는 숙식비, 왕복 교통비, 요양시설 이용료 등의 비용으로 일당(24시간 기준) 15마르크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방문 진료나 요양서비스가 소정의 치료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질병 금고는 예방 의료기관에서 숙식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입원 환자 중 18세 이상의 피보험자는 일당 10마르크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일부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재정 상태를 확인한 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원서비스는 1회에 4주 이상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고 매 3년마다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 회복 간호 급여

질병 금고는 계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해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환자의 가족이 제공했을 때는 피보험자에게 간호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간호 서비스는 1차적으로 환자의 자택에서 제공하며 이는 환자가 보다 친숙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간호 급여는 회복기 환자의 간단한 치료나 간호를 가정에서 받도록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단지 간호만을 받기 위해 많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1989년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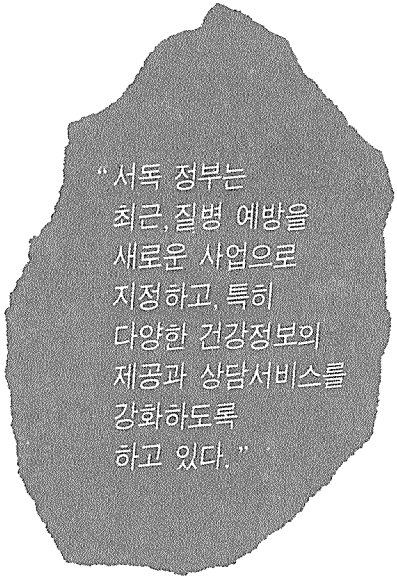

간호 급여는 환자의 가족이 장기 휴가나 불가피한 사유로 간호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년에 4주간의 기간 내에서 간호 대체 요원을 파견하며, 이는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휴가를 주기 위한 것이며 일시적이나마 간호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 금고는 간호 급여를 위해 1일 1시간 기준으로 월 25회까지 간호 요원을 파견하며 이를 환자의 가족이 대신할 경우 월 400마르크의 수당을 지급한다.

간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격 요건은 일정 기간 이상 질병 금고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스스로 돌볼 수 없어 상당 기간 계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여야 한다.

다.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사업

최근 서독 정부는 질병 예방을 의료 보험제도 내에서의 새로운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하여 급여 범위 및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즉 질병 금고는 질병 예방 분야에 있어, 특히 보건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강 프로그램에 있어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질병 금고에서 금연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거나, 식생활이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고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피용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후원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질병 예방 사업은 개인의 생활 습성, 환경, 직업 등과 관련한 질병 및 사고 예방을 포함하고 있고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인 경우 질병 금고는 상해(재해) 보험과 직업 안전 및 건강 유지 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질병 금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질병 예방 사업의 범위에는 질병 예방에 대한 홍보와 사고 위험이 높은 계층을 위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상담·지도 및 30세 이상의 여성과 45세 이상의 암 검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질병 예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질병 금고는 의사나 자치 건강 관리 단체, 공공 보건 당국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및 후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 관리공단 기획조사실〉